

[서식 예]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(인락조서로 토지, 채권자가 선정당사자)

부동산강제경매신청

채권자(선정당사자)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겸 소유자 〈★★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청구채권의 표시

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집행권원의 표시

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 임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낙조서 정본

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음

신 청 취 지

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,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

신 청 원 인

- 1. 채권자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20○○. ○. ○.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 임금청구사건에서 '소외 ���, 채무자 ◇◇◇는 연대하여 20○○. ○. ○.까지 채권자 ○○○에게 금 ○○○원을, 채권자 ○①○에게 금 ○○○원을, 채권자 ○②○에게 금 ○○○원을 각 지급하고, 소외 ���와 채무자 ◇◇◇가 20○○. ○. ○○.까지 위 각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'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, 채무자는 20○○. ○○. 의 청구를 인낙하여 '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.'는 취지로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되었습니다.
- 2.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	당사자선정서	1부
1.	집행력 있는 인낙조서 정본	1부
1.	송달 증명원	1부
1.	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	1 부
1.	부동산목록	1부
1.	이해관계인목록	2부
1.	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(등기소·시군구청통보용)),
	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(등기소보관용) - 2	각 1부
1.	법원보관금영수증	1부
1.	송달료납부서	1부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채권자(선정당사자)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당 사 자 선 정 서

선정 당사자:

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, 다음 소송에 관하여 선정자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법 제 53조 제 1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.

- 다 음 -

- 1. 사건의 표시 선정자들의 부동산강제경매사건
- 2. 사건선정당사자의 공동 이해관계에 대하여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과 동일 사업체에서 근로한 근로자임.

20 . . .

선정자

성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



[별 지]

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- 1.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-ㅇㅇ 답 665㎡
- 2.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180 m²

끝.



[별 지]

이해관계인의 표시

번 호	구 분	성 명	주 소
	채권자 겸 가압류권자	00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1		01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		02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2	채무자 겸 소유자	$\Diamond \Diamond \Diamond \Diamond$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3	근저당권자	◈◈은행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4	근저당권자	주식회사 ■ ■ 상호저축은행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

제출법원	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 행법 제79조제1항, 제 268조)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80조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			
불복절차 및 기간	(신청인) · 신청기각·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) 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 (이해관계인) ·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).					
비 용	• 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• 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•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: 채권금액의 1,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(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)} 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(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2호)납부 • 감정료, 신문공고료, 부동산현황조사료,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					
기 타	야 함. ·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(대법원 1983. 10. 15.자 83마393 결정). ·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,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(대법원 1968. 6. 3.자 68마378 결정). · 경매신청서에 원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음.					